

# 감정평가서

건명	김지연 소유물건 (2025타경32001)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조 선 동
감정서번호	K2511-1-0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금호감정평가법인

#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시권*



(인)

(주)금호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김시권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육역사천일백오십오만구천육백원정 (₩641,559,6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조 선 동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지연 (2025타경3200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 시 목 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11.07	2025.11.06 ~ 2025.11.07	2025.11.1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620.1	토지	1,620.1	396,000	641,559,600
		이	하	여	백	
	합 계					₩641,559,6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정평가사 <i>김시권</i> (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1.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위천삼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임의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3.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되, 토지의 경우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4. 기준시점

본건 평가시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5.11.07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 5. 기타 참고사항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한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임.

####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공시기준일: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논공읍 상리 1416	4,887.5	답	전	일반공업	세각(가)	가장형 평지	200,500	

#### 2. 시점수정치의 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업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 ~ 2025.11.07.	0.683 % (1.00683배)	2025.01.01 ~ 2025.09.30 : 0.601 2025.09.01 ~ 2025.09.30 : 0.064 $( 1 + 0.00601 ) * ( 1 + 0.00064 * 38/30 )$ ≒ 1.00683

▷ 미고시 월은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 3. 지역요인 비교치의 산정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개별요인 비교치의 산정

- 본건 기호(1) / 비교표준지(가)

조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99	본건은 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1.00	대등함.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 의 정도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 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비교치	0.99 × 1.00 × 1.00 × 1.00 × 1.00		0.99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 의거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해 보정이 필요함.

$$\text{그 밖의 요인보정치} = \frac{\text{사례로 비준한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가격}}{\text{기준시점 당시 비교표준지가격}}$$

### (1) 인근지역 내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거래) 시점	목적
A	논공읍 상리 ****	2,732.3	답	일반공업	답	393,000	2024.08.21	시가참고
B	논공읍 상리 ****	1,136.5	답	일반공업	전	381,000	2025.03.08	담보
C	논공읍 상리 ****, ****, ****	1,487.8	답	일반공업	답	422,503	2025.02.12	실거래
D	논공읍 상리 ****	1,281.8	답	일반공업	답	393,197	2024.03.15	실거래

### (2) 인근지역 유사토지 지가수준

지리적위치	이용상황(용도지역)	지가수준
평가대상 인근	농경지(일반공업지역)	@ 400,000원/㎡ 내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 1) 비교사례의 선정

표준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물적 유사성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례(A)를 선정함.

### 2) 평가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기호	사례기호	사례단가 (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사례기준가격 (원/㎡)
가	A	393,000	1.01008	1.000	1.010	400,931

① 시점수정치(2024.08.21.~ 2025.11.07.) : 1.01008배(1.008%)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지가변동율계산 인용)

② 지역요인비교치 :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대등함.(1.00)

③ 개별요인비교치(비교요인 및 항목은 하기 개별요인비교표 참고)

개 별 요 인		비교치	
조건	비 교 내 용	사례	표준지
접근조건	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우세함.	1.00	1.01
자연조건	표준지는 사례 대비 자연조건 대등함.	1.00	1.00
획지조건	표준지는 사례 대비 획지조건 대등함.	1.00	1.00
행정적조건	표준지는 사례 대비 행정적조건 대등함.	1.00	1.00
기타조건	표준지는 사례 대비 기타조건 대등함.	1.00	1.00
비교치	$1.01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1.010	

### 3) 기준시점(2025.11.07) 당시의 비교표준지가격

구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치	비교표준지 가격(원/㎡)
가	200,500	1.00683	201,86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비교표준지 기호	사례기호	평가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①)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②)	가격격차 (=①/②)
가	A	400,931	201,869	1.986

상기에서 산정된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비교사례를 기준한 가격의 격차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밖의 요인보정은 상향 보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비교표준지 (가): 1.98 ]

##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산식 = 공시지가(원/㎡)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그 밖의 요인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00,500	1.00683	1.000	0.990	1.98	395,704	396,000

##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C	논공읍 상리 ****,****,****	1,487.8	답	일반공업	답	422,503	2025.02.12	실거래
D	논공읍 상리 ****	1,281.8	답	일반공업	답	393,197	2024.03.15	실거래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상기 거래사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사례(D)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 2. 사정보정치의 산정

상기의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 3. 시점수정치의 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업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4.03.15 ~ 2025.11.07.	1.754 % (1.01754배)	2024.03.01 ~ 2024.03.31 : 0.160	
		2024.04.01 ~ 2024.04.30 : 0.129	
		2024.05.01 ~ 2024.05.31 : 0.174	
		2024.06.01 ~ 2024.06.30 : 0.115	
		2024.07.01 ~ 2024.07.31 : 0.108	
		2024.08.01 ~ 2024.08.31 : 0.190	
		2024.09.01 ~ 2024.09.30 : 0.081	
		2024.10.01 ~ 2024.10.31 : 0.072	
		2024.11.01 ~ 2024.11.30 : 0.033	
		2024.12.01 ~ 2024.12.31 : 0.069	
		2025.01.01 ~ 2025.09.30 : 0.601	
		2025.09.01 ~ 2025.09.30 : 0.064	
		$( 1 + 0.00160 * 17/31 ) * ( 1 + 0.00129 )$ $* ( 1 + 0.00174 ) * ( 1 + 0.00115 ) * ( 1$ $+ 0.00108 ) * ( 1 + 0.00190 ) * ( 1 +$ $0.00081 ) * ( 1 + 0.00072 ) * ( 1 +$ $0.00033 ) * ( 1 + 0.00069 ) * ( 1 +$ $0.00601 ) * ( 1 + 0.00064 * 38/30 )$ $\approx 1.01754$	

▷ 미고시 월은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 4. 지역요인 비교치의 산정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개별요인 비교치의 산정

- 본건 기호(1) / 거래사례(D)

조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1.00	대등함.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비교치	1.00 × 1.00 × 1.00 × 1.00 × 1.00		1.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상기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본건 토지의 시산가액(비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산식 = 사례토지가격(원/㎡)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393,197	1.00	1.01754	1.000	1.000	400,094	400,000

##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기호	토지면적(㎡)	적용단가(원/㎡)	토지가액(원)
공시지가기준법	1	1,620.1	396,000	641,559,600
거래사례비교법	1	1,620.1	400,000	648,040,000

### 2. 토지의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기에 선정된 각 시산가액을 검토한 결과, 양 시산가액 공히 인근지역의 호가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산출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 및 시장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가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적용단가(원/㎡)	토지가액(원)	비고
1	논공읍 상리 1401	1,620.1	396,000	641,559,600	
합 계		1,620.1		641,559,600	

##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

### 1.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기호(1)	1,620.1	396,000	641,559,600	
합 계		1,620.1		641,559,600	

### 2. 결정의견

상기 산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상리	1401	답	일반공업지역	1,620.1	1,620.1	396,000	641,559,600	
합 계								₩641,559,600.-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위천삼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경지정리 농지 및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며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농로 및 도로 정비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농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농경지(답)임.

##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구거 일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의 포장농로와 접근 가능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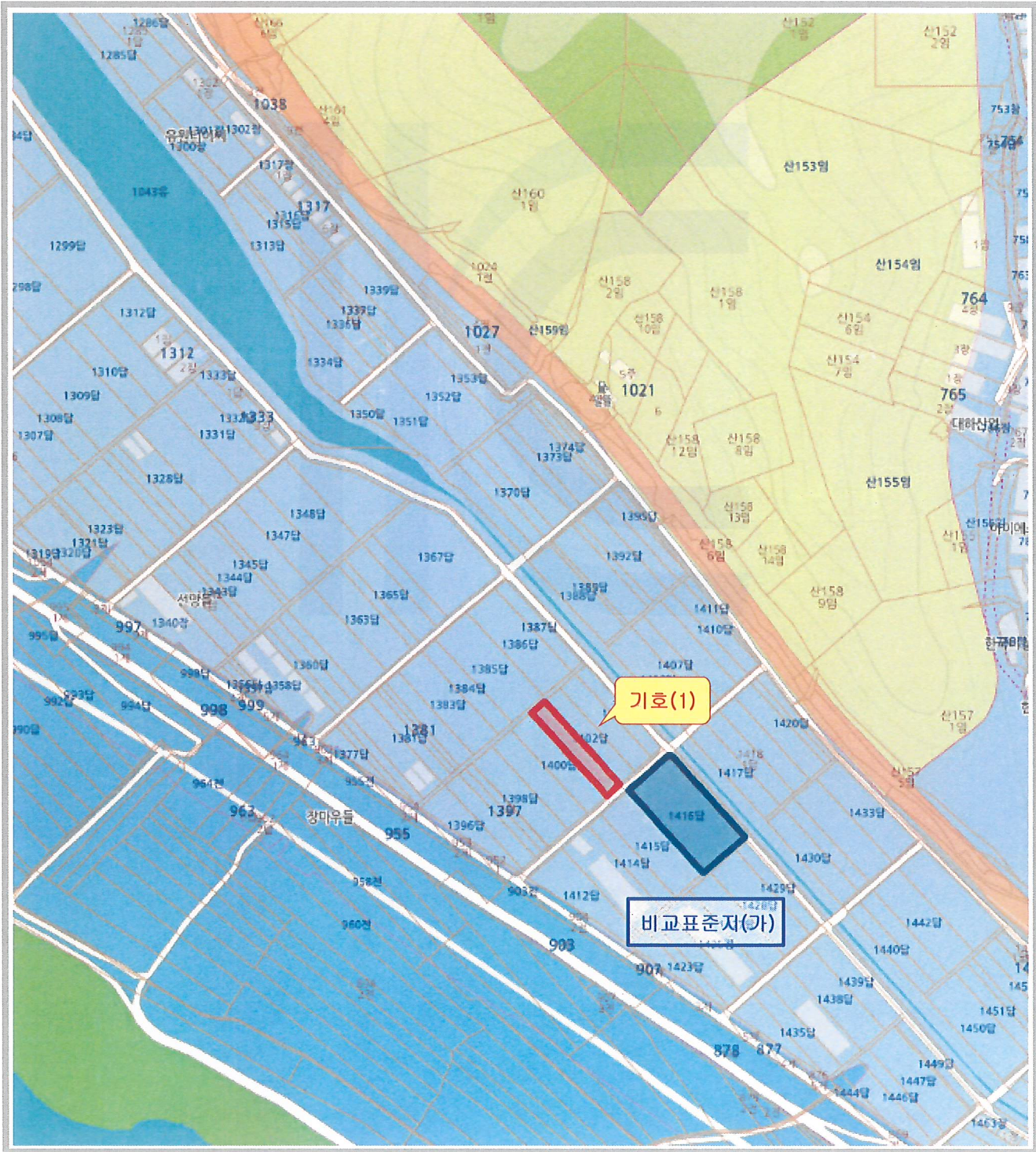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 타: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함.

#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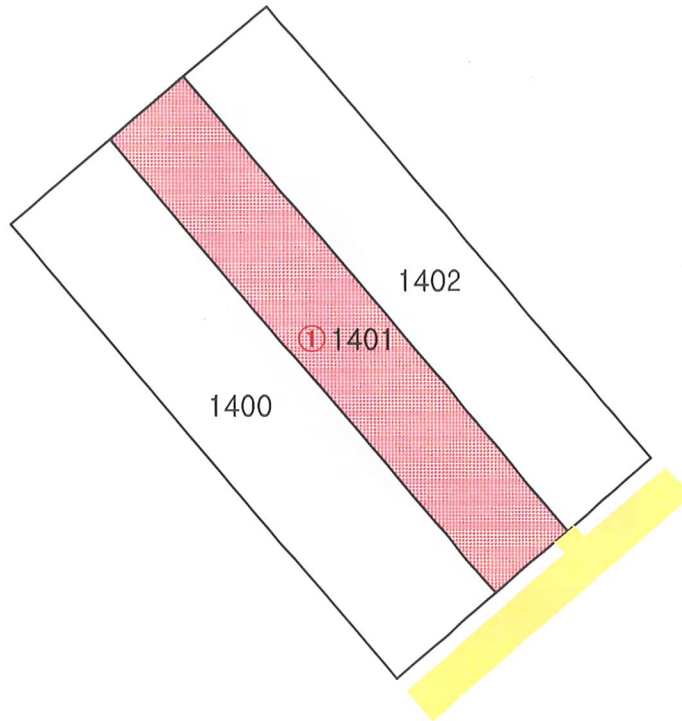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1401번지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축척: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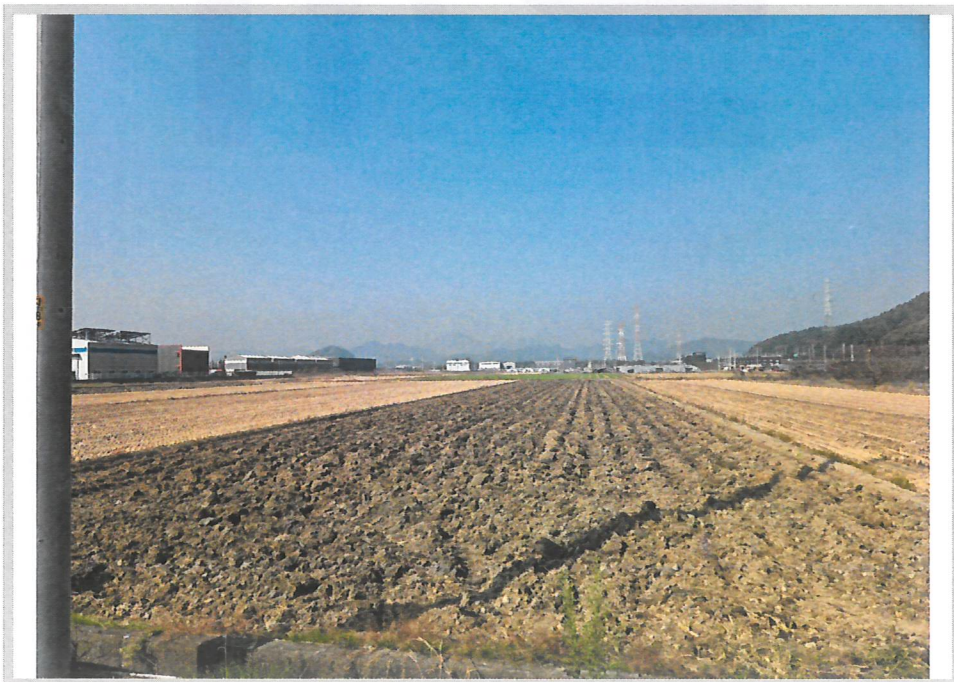


범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등기)
	 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미등기)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3층이상	 지하층

#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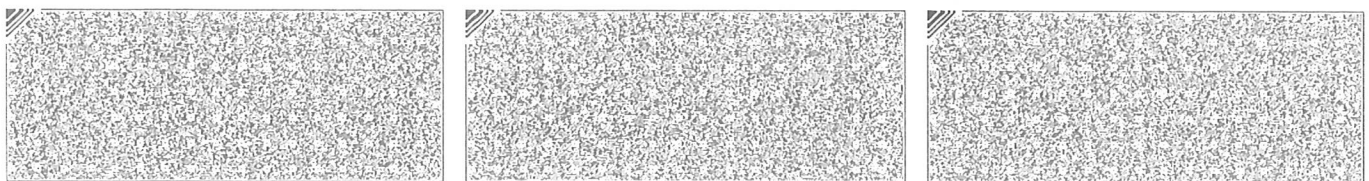


발급번호 : 202527710006155352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11/ 0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주식회사금호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2, 5층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1401	답	1,62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일반공업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일반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하천구역 <input type="checkbox"/> 소하천구역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제한구역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11/ 04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축척 1/1700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 202527710006155352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5/ 11/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li> <li>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li> <li>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li> <li>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li> </ol>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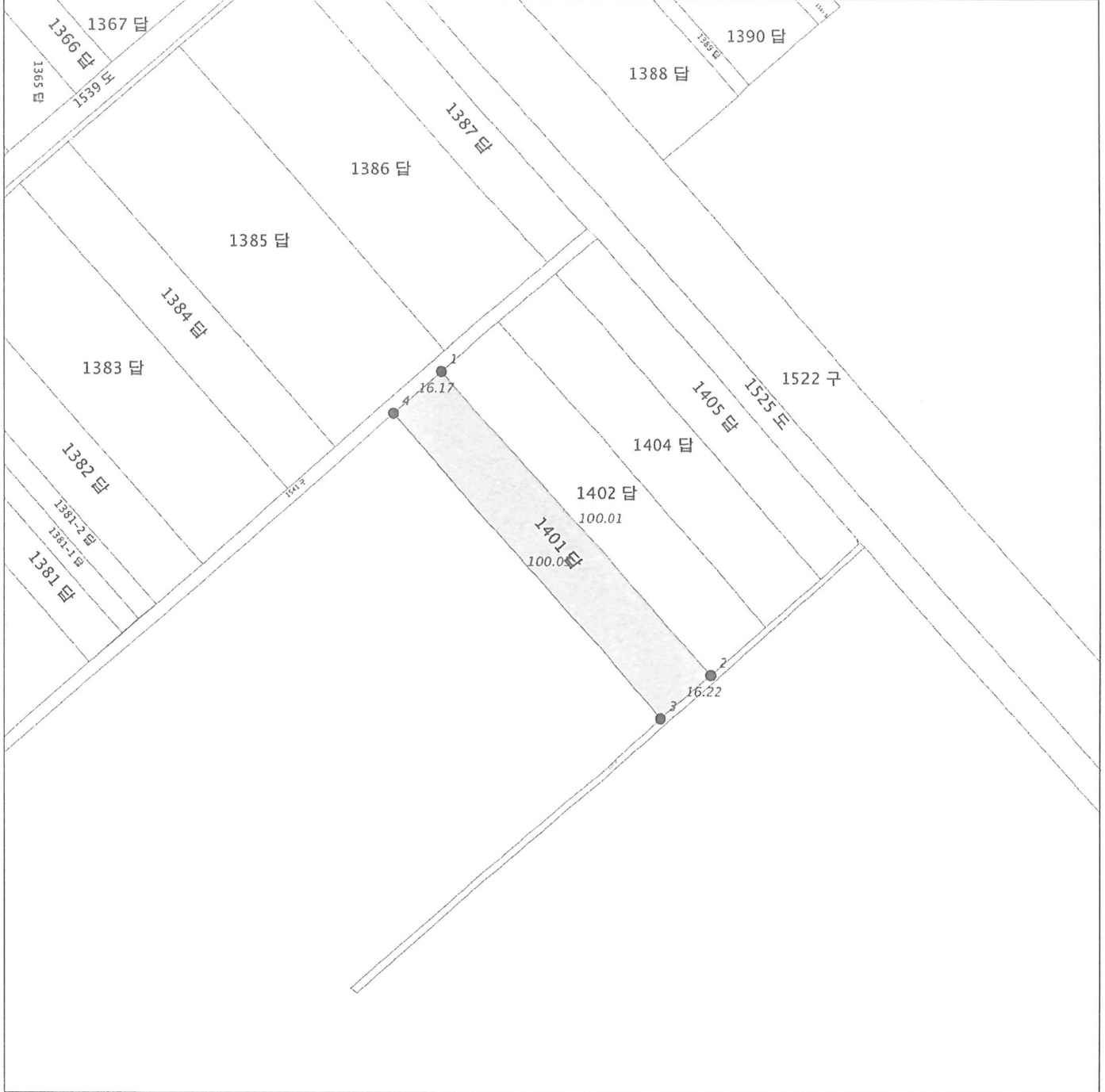


문서확인번호 : 1762-2296-3630-0874



#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527710006155355	처리시각	13시 13분 58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지번	1401번지	축척	수직축척: 1/1000 수평축척: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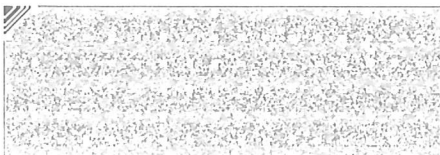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04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2771025325-1401-0000		도면번호	7	발급번호	202527710-00615-5353
토지소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장 번호	1-1	처리시각	13시 12분 45초
지 번	1401	축척	수치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 토지 대장

지 목	면 적 (㎡)	사 유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주 소		등 록 번 호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성 명 또는 명 칭	등 록 번 호								
(02) 답	*1,620.1*	(67) 2013년 09월 11일 경지정리 완료	2023년 02월 07일	김지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40, 102동 601호(송현동, 앞산청구제네스)	720102-2*****			용도지역 등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제정책특례특별부의 좌표기 체계측지계로 변환된 토지임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급수정 년월일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원/㎡)	2019년 1월 1일	173,500	2020년 1월 1일	182,600	2021년 1월 1일	202,300	2022년 1월 1일	208,200	2023년 1월 1일	191,300	2024년 1월 1일	195,200	2025년 1월 1일	196,4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마크드로드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